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사법경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등 수사 시  
공수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 신청 〉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28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3.
3. 회 부 일 : 2025. 1. 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7 등).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신·구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 <p>제200조의7(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4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
| <p>&lt;신설&gt;</p>               | <p>제201조의3(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제201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
| <p>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생략)</p> | <p>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현행과 같음)</p>                                                                                                                                              |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다만,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  
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  
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다음과 같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음으로써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음.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제200조의2<sup>1)</sup>제1항).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

(2)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제201조<sup>2</sup>)제1항). 또한, 긴급체포(제200조의3<sup>3</sup>)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할 때에도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함(제200조의4<sup>4)</sup>제1항).

(3)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음(제215조<sup>5)</sup>제2항).

한편, 지난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정·시행 및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 
- 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공수처”) 출범으로 공수처법 제2조<sup>6)</sup>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경찰뿐만 아니라 공수처에도 부여된 바 있음(공수처법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  
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  
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7)제1항제1호). 특히, 이 중 판사(대법원장·대법관 포함)·검사(검찰총장 포함) 및 경찰공무원(경무관 이상)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유지권(기소권)도 함께 부여되었음(같은 항 제2호).

그러나 공수처법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시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별도로 개정되지 않았음. 그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경우 검찰청 소속 검사 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이하 “수사처 검사”<sup>8)</sup>)에게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sup>9)</sup>

뿐만 아니라, 판사·검사·경찰 등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까지 기존과 같이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것은 공수처법 제정·시행과 공수처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제식구감싸기” 등의 폐해가 계속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음.

---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처장·차장 등) ② 수사처에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9) 연합뉴스, “尹측 “공수처, 경찰 영장 청구는 위법”...공수처 “적법한 절차””, 2025. 3. 9.

이에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수사 시 검찰청 소속 검사를 배제하고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즉,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은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과,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는 영장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를 통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여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당초 공수처 설립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① 이에 대하여 헌법 제12조제3항<sup>10)</sup>의 ‘검사’는 검찰청 소속 검사를 의미하므로 법원에 대한 영장청구권은 수사처검사가 아니라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있고, 그에 따라 사법경찰관 또한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 ②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목적을 둔 독립기관으로서 공수처를 설립한 취지와 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처검사의 사법통제권한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와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③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수사처검사도 결국 이를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므로(공수처법 제26조<sup>11)</sup>)

---

10)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 이러한 사건까지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위 ①과 관련, 지난 2021년 공수처법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 사건<sup>12)</sup>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헌법 제12조제3항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sup>13)</sup> 수사처검사의 영장청구권<sup>14)</sup>을 인정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sup>15)</sup>

또한, 최근 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신청을 받아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한 사례<sup>16)</sup>가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公所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13) 이어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음.

14)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과거 여러 차례 실시되었던 특별검사 또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15) 별도 수사·기소 기관의 영장청구권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해외사례로,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erious Fraud Office, SFO)’는 중대 사기범죄, 뇌물범죄, 대규모 경제범죄, 기업범죄 등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권한을 가지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국가범죄수사청(National Crime Agency, NCA)의 협조를 요청하며,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강제권한이 없어 지역 경찰 등에 영장 집행 동행을 요청한 후 수색을 실시한다고 알려져 있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2019. 12.

개정안과 관련, 법무부는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직접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수사기관’으로, 직접수사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기소권 및 직접 영장청구권 등이 부여되었을 뿐,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영장심사권과 같은 ‘사법통제’ 권한은 배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따라서 수사처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영장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당초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및 그에 따른 직무배제·징계요구 등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사법체계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sup>17)</sup>

한편, 경찰청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전국에 지검 및 지청이 있는 검찰청과 달리 경기 과천에만 청사가 있는 공수처의 경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신청하는 영장을 모두 접수·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sup>18)</sup> 물리적으로 공수처 청사와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영장 청구시한 등 준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이 사안별로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중에 영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의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sup>19)</sup>

16) 헤럴드경제, “尹측 ‘공수처가 왜 경찰 영장 청구하나’…현재는 이미 인정했다”, 2025. 3. 17.

17) 나아가 법무부는 “제식구감싸기”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자나 범죄 유형에 따라 어느 곳에 영장을 신청할지 선택하도록 할 경우 강제수사 절차의 통일성·엄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음.

18) 2025년 6월부터는 영장 관련 서류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 가능할 예정이나, 전자적으로 편철되지 않는 중요 압수물과 증거서류 등은 ‘문발’을 통해 직접 송부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임.

공수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경우 수사처 검사도 결국 해당 사건을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찰청 검사에게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sup>20)</sup>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찰청 및 공수처가 제기한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i)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수사처검사에게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ii)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이 없는 범죄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사안에 따라 공수처 또는 검찰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할 경우, 다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첫째, 「형사소송법」 및 「공수처법」상 영장 신청·청구 및 각 기관 간 관계 등과 관련한 다른 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9) 나아가 경찰청은 「형사소송법」상 영장 신청·청구 규정 외에 영장심의위원회 절차 규정 미비 등 법적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공수처로 신청할 수 있는 영장 범위가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갖는 범죄에만 국한되는지, 수사(기소)권을 갖는 범죄와 경합된 범죄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 역시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음.

20) 나아가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방안 등에 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음.

예를 들어, 현행법 제197조의2<sup>21)</sup>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수처법 제47조<sup>22)</sup>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있으나, 이러한 보완수사 및 징계요구 등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에 해당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sup>23)</sup>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수사처검사에 대한 영장신청 규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공수처법」 규정 등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그 외에도 개정안은 영장신청에 관해서만 수사처검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00조의3제2항<sup>24)</sup>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2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3) 뉴스1, “대검 “공수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권한 없다”...의견 전달”, 2021. 4. 30., 서울경제, “[단독]‘출범 100일’ 공수처...‘경찰 통제권한’ 두고도 檢 충돌”, 2021. 4. 30..

2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0조의4제6항<sup>25)</sup>은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수사처검사의 승인을 받거나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개정안은 체계·자구 측면에서 일부 법조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임.

예를 들어, 안 제200조의7은 ‘제200조의4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부분은 용어를 수정하고 구속영장 신청에 관한 안 제201조의3으로 옮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은 그 밖에도 안 제200조의7 제목을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으로 수정하는 등, 체계·자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048 |

2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